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24회 제1차 임시회(2018. 9.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희옥

#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8년 8월 23일 (목)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8월 27일 (월)

## 4. 관련근거

-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 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 공포, 2018.1.1.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6.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용어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안 제1조부터 제3조)
- 나.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 (안 제4조부터 제7조)
- 다. 납세자보호업무의 심의 (안 제8조에서 제9조)
- 라.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 및 처리 기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9조)
- 마.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3조)
- 바. 권리보호요청 처리원칙, 대상,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부터 제28조)
- 사.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29조부터 제30조)
- 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1조부터 제33조)

## 7.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8. 7. 26. ~ 8. 15. (20일간)
  - 2)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8.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와 업무처리 방법 및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 ○ 조례안의 구성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3조까지 총33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조례안 주요 내용은

- 가.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나. 안 제8조부터 제32조까지는 납세자의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안은

-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 안 제6조의 납세보호관 업무 중 고충민원 처리 등은 현재 세무분야의 전문인력인 세무담당 직원이 처리하고 있고, 또한 업무처리를 위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 안 제5조의 선발기준에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추가 선발하는 것은 추후에 인력수급 문제와 인건비 비용추계에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해당부서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21조(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정(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또는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 추징금,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범칙사건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법 제 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